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로 약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연구소는 한국에 적합한 경제이론을 개발하고, 경제현실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본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경제이론, 현실, 정책의 조사·연구
2. 회원 상호간의 학술토론회의 개최
3. 공개 학술세미나의 개최
4.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5. 기타 연구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본 연구소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본 연구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를 밝힌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의 전임교수
2.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3. 기타 본 연구소의 연구·조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6조【가입】① 본 연구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본 연구소의 소장을 경유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자격을 심사하여야 하며, 소장은 심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탈퇴】본 연구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연구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 총회에의 참석과 의결
2. 본 연구소의 자료와 시설의 이용
3. 정기학술토론회 및 공개세미나 발표자료의 청구
4. 정기학술토론회 및 공개세미나에서의 연구결과의 발표와 토론
5. 본 연구소 간행물에의 연구결과의 발표

6. 기타 본 연구소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의 우선적인 참여

제9조【의무】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기학술토론회 참여
2. 소정 회비의 납입
3. 기타 본 연구소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② 회원이 장기 해외여행 중인 경우에는 전항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징계】①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이 제9조의 의무를 장기간 태만히 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1조【제명】① 회원이 본 연구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로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청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 의결에는 총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2조【기관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자료회원】본 연구소에는 기관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자료회원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총회

제13조【구분】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과 소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4. 지속발전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14조【총회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의 의결
4.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5. 연간 예산과 결산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15조【소집통지】총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이사장과 소장은 소집일 1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의안,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의장】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단, 이사장 유고시에는 소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17조【의결방법】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중 이사회가 타당하다고 결의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구성】① 이사회는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의 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③ 본 연구소의 소장과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9조【이사회 의결사항】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및 소장의 선출
2.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기금의 적립, 운용, 처분에 관한 사항
4. 본 연구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5. 본 연구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6.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안건

제20조【이사 및 이사장의 임기】① 이사 및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이사 또는 이사장의 임기는 퇴임한 이사 또는 이사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 선임된 이사 또는 이사장이 취임이 늦어질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 또는 이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이사회 소집】① 이사회는 필요할 때 소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이사장은 의안, 일시, 장소 등을 각 이사에게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장】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단, 이사장 유고시에는 소장 또는 이사장이 지정한 이사가 이사장을 대리하여 의장이 된다.

제23조【의결】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회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긴급의결】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서면의결을 추진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 단서의 추인을 받지 못한 긴급의결은 30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5조【감사】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가 회계 및 업무상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2명을 둘 수 있다.

## 제5장 집행기구

### 제1절 소장

제26조【책무】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사업 및 운영을 관장한다.

제27조【선임】소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지속발전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28조【임기】①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절 연구부

제29조【기능】연구부는 학술연구의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학술토론회 및 공개세미나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본 연구소의 연구·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연구부장】연구부장은 회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31조【전문연구실】① 연구부에는 전문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야 별로 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실장은 소속 연구위원 중에서 연구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제32조【연구위원】연구위원의 자격은 회원에 한한다.

제33조【연구원】① 각 전문연구실은 조사·연구의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연구원은 연구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 제3절 사무국

제34조【기능】본 연구소의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5조【사무국부서】본 연구소의 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행정실
2. 자료실

3. 출판실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부서

제36조【임명】사무국의 부서장 및 소속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37조【구성】본 연구소의 실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원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8조【임명】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39조【임기】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 등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등에 관하여는 이사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40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2. 주요 사업의 집행
3. 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의 제청
4. 회원에 대한 경고, 자격정지의 의결
5. 전문연구실의 개설과 폐지 및 사무국 조직의 개편
6. 기타 소장이 연구소 운영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1조【운영위원회의 소집】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때, 운영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의 제청에 의하여,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운영위원장은 각 운영위원에게 의안, 일시, 장소 등을 각 운영위원에게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의장】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단, 운영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지정한 운영위원이 대리하여 의장이 된다.

제43조【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장 재 정

제44조【재산의 구분】① 본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전 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본다.

제45조【재산의 관리】① 기본재산은 이사장이 관리한다. 다만, 그 관리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운영재산은 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그 관리의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6조【수익금】본 연구소의 운영비는 기금수입, 정기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 제47조【잉여금의 처리】본 연구소의 운영에 의하여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8조【회계연도】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49조【보고의무】이사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0조【감사】감사는 전조의 각 서류를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1조【예산의 의결】이사장은 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52조【회계장부의 비치】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의 서류를 연구소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3조【기부금 모금 및 사용의 공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7장 명예이사장, 명예소장, 고문, 지속발전위원회 및 후원회

- 제54조【명예이사장, 명예소장, 고문】① 소장은 우리나라 경제현실과 정책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 또는 본 연구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이사장, 명예소장 또는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
- ② 명예이사장, 명예소장 및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는 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5조【지속발전위원회】① 지속발전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장기적 운영, 재정집행 및 연구방향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의사결정을 한다. 또한 본 연구소의 장기적 운영 관점에서 기본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② 지속발전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본 연구소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4~6명을 지속발전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지속발전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지속발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④ 지속발전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6조【후원회】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57조【해산】본 연구소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

제58조【청산】① 총회의 해산 의결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즉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부 칙

제1조【준용】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2조【개정 및 발효】본 정관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